J 이혼 청구의 소 소장

**소 장**

원고: 김길동 (주민등록번호: 801225-\*\*\*\*\*\*\*) 등록기준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우편번호: 0609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기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07 코니빌딩, 여기로파트너스  
(전화: 02-1234-5678 팩스: 01-9876-5432)

**피 고 1. 이을동 (주민등록번호: 810623-\*\*\*\*\*\*\*)**등록기준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우편번호: 06590)

**피 고 2. 한병동 (주민등록번호: 820513-\*\*\*\*\*\*\*)**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우편번호: 07020)

사 건 본 인 1. 0 0 0 (주민등록번호 - )

2. 0 0 0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이을동(피고 1)은 이혼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이을동(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 이을동(피고1의 이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 ○. ○.까지는 매월 금 1,2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 ○. ○. 까지는 매월 금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위 제2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원고와 피고 이을동(피고 1)은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건본인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원·피고의 기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참조).
2. **재판상 이혼 사유**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파탄의 경위

원고는 피고 1과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2000년 00월 경 부터 00월까지 약 7개월간 노력하였으나, 피고 1은 다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2와 연인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인스타그램 게시글과 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며 거짓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의 존재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 이을동(피고 1의 이름)의 거듭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를 사유로 이혼청구를 합니다.

3. **위자료 청구**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이을동(피고 1의 이름)의 혼인은 피고들의 간통 또는 기타 부도덕한 관계를 주된 사유로 하여 피고 이을동(피고 1의 이름)이 원고 몰래 피고 한병동(피고 2의 이름)과 사귀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간통까지 함으로써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혼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의 파탄 경위 및 책임관계, 위 피고들의 소득 및 재산상태, 신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어도 위자료로 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 상당합니다.

**4. 재산분할 청구**피고 1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으므로, 원고는 현 상태대로 각자에게 재산이 귀속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피고의 은행 계좌에 예금된 현금 자산의 대부분이 원고의 경제적 도움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 7,000,000원을 청구합니다.

**5.** 친권행사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원고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 1은 사건본인들과 평소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는 등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월 수입과 원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이을동(피고 1의 이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6. 결 론**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인스타그램 게시글 및 문자 기록
4. 갑 제4호증: 기타 관련 증거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024년 ○월 ○일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기로